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

화주기업 OOOO회사(이하 '도급인'이라 한다)와 물류기업 OOOO회사(이하 '수급인'이라 한다)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'물류서비스'를 위탁하고 수급인이 이를 수탁 처리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계약문서)

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'부속합의서'로 구성되며, 필요한 경우에 상호 합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물)

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목적물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물품 및 물품의 보관용기(이하 '화물'이라 함)를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물류서비스의 범위)

-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물류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칭함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급인의 화물에 대한 운송, 보관, 하역, 통관, 설치 및 이와 관련한 업무
 - 2.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시설 제공 및 관리
 - 3. 물류 관리 용역
 - 4.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
 - 5.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서비스 범위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(서비스 요율)

- ① 제4조의 서비스에 대한 제반 요율은 '부속합의서'상의 '요율표'에 의거한다.
- ② 물류컨설팅 비용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.

제6조(비용의 정산)

- ① 제5조에 명시된 요율에 의거한 서비스 수수료는 월 단위로 하며, 수급인은 당월 분의 비용을 익월 10일 영업일(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)까지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익월 말 이전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수급인은 화물 인도 시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서명이 날인된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 일체를 수취 및 보관하되,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도급인에 게 인도해야 하며, 인수증 미회수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. 단,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귀책으로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-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해당 운송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 단, 도급인 또는 도급인 이 지정한 수취인의 귀책으로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제7조(의무 및 책임)

-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도급인이 지정한 최 종목적지에서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화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,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③ 수급인은 화물을 인수할 때 외관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인수 당시 상호 확인되지 않은 화물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 단, 외관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④ 수급인은 대상 화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숙련된 기사 및 작업자를 사용하고, 도급인의 주의사항, 출하지 또는 도착지에서의 각 사업자들이 지시하는 사항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- ⑤ 수급인은 운송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급인의 사용인 및 기타 제3자의 사망, 상해, 기타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⑥ 수급인은 물류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대인·대물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8조(손해배상)

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불이행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

-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②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연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선정한손해사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화물의 가액은 도급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,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원가, 화물의 도착지 가격, 수급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⑤ 화물의 운송이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에는, 관련 법령과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적용한다.
- ⑥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의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에 수 급인은 도급인에게 피해 화물의 재포장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⑦ 수급인은 도급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,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,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. 단, 상계를 하고자하는 경우, 도급인과 수급인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⑧ 파손 화물 중 사용 가능한 것은 도급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급인이 부 담하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감액할 수 있다.
- ⑨ 수급인은 운송도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,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. 단,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.
- ①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도급인의 추가비용 및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.

제9조(면책사항)

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단, 수급인이 화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화물의 고유한 결함,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
- 2. 전쟁, 폭동, 내란, 테러, 무력충돌
- 3. 천재지변, 전염병 유형 또는 불가항력
- 4.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봉쇄,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
- 5. 재판상의 압류, 화물의 출입국,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
- 6.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
- 7. 도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
- 8. 그 밖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정한 수급인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(전자서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며,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 의무)

-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 득한 상대방의 기술상,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 및 제반 정보를 제3자에 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본 계약에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양도 금지)

-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상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며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. 이와 관련하여 양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양도 이전에 본 계약에 의한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양도 후에 발생하는 수급인의 일체의 채무는 수급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.

제12조(계약내용의 변경)

①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,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승낙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 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기존 계약 및 부속합의서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3조(서비스 품질관리 방안)

수급인이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- 1. 도급인은 필요 시 수급인과 합의한 물류서비스의 수행기준을 수급인에게 제시하고, 수급인은 동 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수행
- 2. 도급인은 수급인의 물류서비스 평가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수급인의 서비스 기준에 대한 수행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

제14조(계약의 해제·해지)

-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 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 - 1.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금융기관,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,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 - 2.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부도, 파산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,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 합병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- 3.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2.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3. 수급인의 대상 업무에 대한 수행기준 평가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대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
-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제1항 및 2항 각 호의 해제·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·해지되었을 때에는 피해제자·피해 지자가 해제권자·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.
- ⑤ 계약의 해제·해지와 관련하여 해제·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

에는 피해제·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⑥ 도급인과 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투입하는 투자비용은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,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해지시점까지 각 당사자의 투자비용 및 그에 따른 직·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및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

제15조(부속합의서)

- ① 계약서 본문 외에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며, 본문에 명시된 사항 외에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 사이의 추가적인 약정은 부속합의서에 명시한다.
- ②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급인 과 수급인 쌍방 간 협의 하에 '부속합의서' 내용을 수정, 변경 및 보완 할 수 있다.

제16조(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)

본 계약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유효하며,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
제17조(관할 및 준거법)

본 계약의 체결, 효력,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한다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양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,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도급인 주 소

상 호

대표자

<u>(၅)</u>

수급인 주 소

상 호

대표자

(1)